

- 교보악사자산운용(주)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합리화를 위한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개정사항 (2025.10.01 개정, 2026.01.01 시행) 반영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.
- 동 기준의 개정 주요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- 주요 개정 내용
 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조정·의결 사항 중 성격상 조정·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(법령 등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, 정기 공시 사항,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등)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(제9조, 제11조)
 - 판매임직원 등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합의를 의무화하고, 필요시 개선요구권 신설 (제36조)